

2021년 용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안

- ①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, ②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
③ 일본 수출규제 영향 사업장(A등급이상)은 점수와 관계없이 최우선선정

선 정 항 목	항목별 가중치	비 고
■ 공통적용 항목	80점	
① 사망사고 감소 사업 참여 사업장(패트롤 등)	10점	• (신설) '19~'20년 기술지도 사업장
② 투자공정의 유해·위험도가 높은 사업장	15점	• 재해율 통계 : 지역별 300인 미만 확정통계 사용 • 소업종기준 재해율 상위 10개 업종 선정하여 배점 (덧붙임1 참조)
③ 고용노동부·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· 점검, 기술지원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	15점	•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
④ 고용증가 사업장	5점	• 신청 전 1년 근로자수 비교 (18년 19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확인)
⑤ 산재장해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(해당 근로자 1명당 2점, 최대 5명인정) • 근로계약서, 산재장해보상금 지급확인서 등 확인	10점	• 산재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지급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
⑥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	10점	•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노사문화우수기업 강소기업인정 일학습병행제(인정유효기간 내) 등 우수인정사업장 • 인정서 및 대상명단을 확인 할 수 있을 경우 인정
⑦ 법 제84조 및 제89조와 영 제74조부터 제77조 까지에 따른 안전인증제품의 구입 또는 안전 인증제품을 제작하는 사업장	10점	• 다수품목의 경우 신청총액과 안전인증품 신청액 비율에 따라 가중치 조정
⑧ 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	5점	• '19~'20년 공생협력 참여 협력업체
■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 항목	20점	
⑨ 최근 3년간('17~'19년) 부산관내 사고사망 재해다발 위험업종(중업종)	10점	• 사고사망자수가 많은 업종으로 점수부여(덧붙임2참조)
⑩ 최근 3년간('17~'19년) 사고성 재해발생 사업장	3점	• 재해자 2명 이상: 3점, 1명: 2점, 0명: 1점
⑪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(인정 유효기간 내)	3점	
⑫ 2019년 작업환경측정 실시사업장	2점	• 실시결과 제출
⑬ 2019년 특수건강진단 실시사업장	2점	• 실시결과 제출
계	100점	

※ 선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공통항목 총점-자율항목 총점-소액대출-소규모(근로자수)사업장-신청점수 순으로 적용

※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당해연도 용자신청 접수 불가

※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【덧붙임1】 투자공정의 유해·위험도가 높은 사업장(산재보상보험가입 기준)

대업종	소업종	점수
제조업	연탄맞응집고체연료생산업	15
	유리제품가공업	13.5
	비철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	12
	합금철제조업	10.5
	일반제재업	9
	기타금속재료품제조업	7.5
	목재건구제조업	6
	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	4.5
	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	3
	법랑철기및프레스가공제조업	1.5
	그 외의 업종	0

대업종	소업종	점수
운수 · 창고 및 통신업	퀵서비스업	15
	특수화물운수업	13.5
	구역화물운수업	12
	택배업	10.5
	수상운수업	9
	소형화물운수업	7.5
	육상화물취급업	6
	항만내의육상하역업	4.5
	각종운수부대사업	3
	해상하역업	1.5
	그 외의 업종	0

대업종	소업종	점수
기타의 사업	골프장및경마장운영업	15
	위생 및 유사서비스업	13.5
	하수도업	12
	음식및숙박업	10.5
	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사업	9
	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	7.5
	개인및가사서비스업	6
	수의사업	4.5
	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	3
	주한미군	1.5
	그 외의 업종	0

【덧붙임2】 최근 3년간('17~'19년) 부산관내 사고사망 재해다발 위험업종(중업종)

광역본부	대업종	중업종	점수
부산	제조업	기계기구,비금속광물및금속제품제조업	10
	운수창고 및 통신업	창고및운수관련서비스업	9
	운수창고 및 통신업	육상및수상운수업	8
	기타의사업	도·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	
	기타의사업	건물종합관리,위생및유사서비스업	7
	제조업	선박건조및수리업	6
	기타의사업	기타의각종사업	5
	제조업	섬유및섬유제품제조업	4
	제조업	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	3
	제조업	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	
	제조업	유리 · 도자기 · 시멘트제조업	
	제조업	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	
	기타의사업	보건및사회복지사업	
	기타의사업	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사업	
	기타의사업	사업서비스업	
	제조업	식료품제조업	2
	제조업	전기기계기구 · 전자제품 · 계량기 · 광학기계 · 기타정밀기구제조업	
	기타의사업	전문기술서비스업	
	제조업	출판 · 인쇄 · 제본또는인쇄물가공업	1
	제조업	의약품 · 화장품향료 · 담배제조업	
	제조업	금속제련업	
	제조업	코크스,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	
	운수창고 및 통신업	철도 · 궤도 · 삭도 · 항공운수업	
	운수창고 및 통신업	통신업	
	기타의사업	해외파견자	
	기타의사업	교육서비스업	
	기타의사업	부동산업및임대업	
	기타의사업	오락·문화및운동관련사업	
	기타의사업	주한미군	
	기타(그 외 사업)		0